

# 이천시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2005. 3. 25(금)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년 3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7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(2005. 3. 24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### 가. 개정이유

- 유가인상 등 최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·운반 수수료의 인상요인이 있는 바, 조례를 개정,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집·운반업체의 신속·친절한 수집·운반처리로 민원발생 요인 사전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·운반 수수료 2원/ℓ 인상
-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 2원/ℓ 인하  
⇒ 기본요금 18,072원, 초과요금 1,565원(변동 없음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최근 유가인상과 물가상승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·운반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집·운반업체의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,
-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·운반수수료를 리터당 2원 인상하고,
- 분뇨위생처리장 사용료를 리터당 2원 인하하는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표1 신·구조문표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### 7. 기타사항 : 없음